

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

- 제 정 : 2000. 5.18 산업자원부장관승인
- 제1차개정 : 2001.12.14 산업자원부장관승인
- 제2차개정 : 2002.12.18 산업자원부장관승인
- 제3차개정 : 2003.12.31 산업자원부장관승인
- 제4차개정 : 2004.12.20 산업자원부장관승인
- 제6차개정 : 2006. 2.20 산업자원부장관승인
- 제8차개정 : 2007. 4.12 산업자원부장관승인
- 제9차개정 : 2007.11.29 산업자원부장관승인
- 제10차개정 : 2008. 8. 8 지식경제부장관승인
- 제11차개정 : 2008.12.17 지식경제부장관승인
- 제12차개정 : 2014. 1.22
- 제13차개정 : 2016.12.28
- 제14차개정 : 2019. 4.24
- 제15차개정 : 2021. 6.18
- 제16차개정 : 2021.12.10
- 제17차개정 : 2022. 8.26
- 제18차개정 : 2024. 3. 6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기본연봉”이란 직위에 따른 급여의 연간 총액을 말한다.
2. “경영성과급”이란 합은 개인 및 기관의 경영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은 다른 법령과 공사의 정관 및 경영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

제1절 상임임원에 대한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

제4조(보수의 종류) 보수는 기본연봉과 경영성과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별표1과 같다.

제5조(경영성과급) ① 경영성과급은 정부가 정하는 성과급 한도 내에서 지급총액을 정하며, 임원별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장, 감사 : 정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
2. 상임이사 : 상임이사 경영성과계약서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사장이 결정
 - ② 사장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기획재정부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」에 따라 중기성과급으로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」에 따른다.
 - ③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 등으로 형사 기소 또는 해임된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고, 지급된 중기성과급은 환수할 수 있다.

제6조(보수의 계산) ① 신규 선임된 임원 및 퇴임한 임원의 경우 선임일 및 퇴임일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는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기본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 임원이 연도 중에 선임되는 경우 해당 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경영성과급은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③ 임원이 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해당 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경영성과급은 퇴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, 지급률은 해당 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률로 한다.

④ 보수의 일할 계산 시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7조(보수지급일) ① 기본연봉은 12등분하여 매월 2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직

전 영업일에 지급한다.

② 경영성과급은 제5조에 따른 지급률이 전부 확정되는 월의 급여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장의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다.

③ 퇴임하는 임원의 퇴임 연도 및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경영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, 제5조에 따른 지급률이 전부 확정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되, 사장의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다.

제2절 비상임 임원에 대한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

제8조(보수의 종류) ① 보수는 기본연봉으로 구성하며 기본연봉은 별표1과 같다.

② 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(보수의 계산) ① 신규 선임된 임원 및 퇴임한 임원의 경우 선임일 및 퇴임일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는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기본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 보수의 일할 계산 시 제6조제4항에 따른다.

제10조(보수지급일) 기본연봉은 12등분하여 매월 2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직전

영업일에 지급한다.

제 3 장 퇴 직 금

제1절 상임임원에 대한 퇴직금

제11조(퇴직금 계산방법) 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의 기본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무 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. 다만, 1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개월로 본다.

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의 감액) ①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하거나, 「상임임원 복무관리요강」에 따라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②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소송

이 계속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미룬다.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제2절 비상임 임원에 대한 퇴직금

제13조(퇴직금 계산방법)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보수규정, 복지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영성과급 가지급) 2000년에 한해서 제7조 ②항의 경영성과급을 임원성과급지급가능총액 범위 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(퇴직금 정산지급) 이규정 제정 이전일까지의 퇴직금은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거 정산 지급하되 퇴직금계산의 기준급여는 별표 1 기준연봉의 1/12로 한다.

제4조(폐지규정) 이 규정 제정일을 기준으로 보수규정, 퇴직금규정 중 임원에 관한사항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(1)

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)

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3)

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4)

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5)

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6)

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7)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8)

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9)

- ①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에 대하여는 2007년 7월 3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 개정 시행일 이전일까지의 퇴직금은 종전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.

부칙 (10)

이 규정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1)

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2)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3)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4)

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5)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6)

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중기성과급제 적용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1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는 성과급부터 적용한다.

부칙 (17)

이 규정은 202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8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 기본연봉

(단위 : 원)

구 분		기본연봉
상임	사 장	<u>해당</u> 연도 정무직 공무원(차관)연봉의 150%
	감 사	사장 기본연봉의 80%
	부사장	사장 기본연봉의 80%
	이 사	사장 기본연봉의 70%
비상임	이 사 ^{주)}	26,400,000

주) 다만, 노동이사에게는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